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34호
-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찬성자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2월 3일
-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0.1.)하였으며 설립허가 및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유명무실하여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 나.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6조의4)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와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제16조의3, 협의회와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16조의4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협력 4. 그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p>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u>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 align="center"><u><삭 제></u></p>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u>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u></p> <p>② <u>부회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중에 호선한다.</u></p> <p>③ <u>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단위 기관단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업무 관련 단체, 관광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u></p> <p>④ <u>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p> <p>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p> <p>① <u>자치구 관광협의회는 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u></p> <p>② <u>자치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의회와의 분사무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나. 입법례

- 「관광진흥법」은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 세종, 인천, 전남, 충남 5곳에서 관광진흥조례에 지역관광협의회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마포와 종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전라남도과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관광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구성) (신설 2017. 3. 16.) ① 협의회의 회장은 도 행정부지사와 도 관광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한다.(신설 2017. 3. 16.)
② 부회장 등 협의회의 임원과 회원의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는 제6항에서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제7항에서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협의회 회장, 부회장의 선임, 회원의 위촉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에서 이에 관해 직접 규정하는 안 제16조의3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법 제48조의9제7항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법제처의 의견¹⁾에 따르면 정관으로 정해야 할 이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바,

안 제16조의3제1항과 같이 협의회 설립의 허가 및 사무의 검사, 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인 시장이 대외적으로 법인(협의회)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회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의 실효적인 구현을 위해 협의회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공무원(예: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인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것은 가능하며,

1) 법제처 의견13-01941, 2013.6.26.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남도과 서울시 마포구의 조례의 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임.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협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부군수)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붙임 1).

- 안 제16조의3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협회의 부회장 선임과 회원의 위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 구성의 세부사항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법인인 협회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안 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는 자치구 관광협의회가 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초 협회는 광역 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협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초 협회는 광역 협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됨을 예상하고 있으나,

구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시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p>③ 시장은 협의회와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u>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u>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u></p> <p>② <u>부회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중에 호선한다.</u></p> <p>③ <u>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단위 기관단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업무 관련 단체, 관광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u></p> <p>④ <u>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p>	<p>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p> <p>① <u>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1부시장으로 하여금 공동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p> <p>③ ~ ④ <삭 제></p>

<p><신 설></p>	<p><u>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u> ① 자치구 관광협의회는 협의회 <u>단체회원</u>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치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회의 <u>분사무</u>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u>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u> 협의회는 자치구 관광협의회를 <u>단체회원</u>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 협의회 <u>분사무</u>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	---

<p>작 성 자</p>	<p>연 락 처</p>
<p>강 현 전문위원</p>	<p>02-2180-8114</p>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거 ○○시 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부군수)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기초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 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 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7항 및 민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기초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 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하 생략)

<붙임 2>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 2021. 2. 22. 》

경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발의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34)
-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강서 3)
 - ※ 찬성자(10) :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봉양순, 안광석, 오한아, 임만균, 최기찬, 최영주, 황규복 의원
- 발의일자 : 2021. 2. 3.(수)
- 제안이유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에 관광협회의 설립허가 및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칙제정 등 추진사항 미비
 -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 3)
 - 협의회 회장의 자격(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 부회장의 조건 및 임명 방법, 협의회 회원 구성 및 위촉 방법,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 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규정(안 제16조의4)
 - 자치구 관광협의회의 서울시 협의회 단체회원으로서 가입 및 활동, 서울시 협의회 분사무소로서 기능 수행

□ 검토의견

○ 관광협의회 구성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항~3항)

- 관광진흥법에 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협의회는 시 소관 위원회가 아닌 서울시와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법인임
- 「민법」 제40조에 법인 이사의 임면 및 사원자격 득실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 구성 세부사항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법인인 협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례로 법인의 회장·부회장의 임명 및 회원의 구성방식 등을 정하는 것은 민간의 법인설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 시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규정(안 제16조의3 제1항)

- 시장은 관광진흥법 및 민법에 따라 협의회 설립의 허가 및 사무의 검사·감독의 책무가 있는 주무관청이며, 협의회회 회장은 민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임
- 협의회 관련 시장의 역할 및 협의회회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시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기초와 광역 협의회회 관계 및 활동 규정(안 제16조의4 제1항~2항)

- 관광진흥법은 조례로 해당 지자체 협의회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자치구 협의회회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자치구 협의회회는 자치구별 조례 및 구청장 허가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

□ 조치 건의

- 개정조례(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2.9.) 중으로 법제처의 회신 후 개정안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

- ① 협의회 회장은 시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중에 호선한다.
- ③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단위 기관단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업무 관련 단체, 관광 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자치구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 ① 자치구 관광협의회는 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구 관광협의회는 시 관광협의회의 분사무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